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 9. 25.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9월 12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7년 9월 13일
- 다. 상정일자 : 제215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17년 9월 25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택

가. 제안이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 형성 및 문제해결 공동대응,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법률적·제도적 기반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를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운영규약에 대해 마포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목적), 제3조(기능) 협의회의 목적과 기능
- 제4조(구성) ~ 제6조(임원의 임기) 협의회 임원 등 구성원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회의 및 의결) ~ 제14조(자문위원) 전체회의, 의장단 회의, 실무협의회 등 회의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
- 안 제15조(사무국) ~ 제18조(회계보고 및 결산)까지는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국 설치, 필요한 경비부담, 공동경비 관리 등 사무국 운영과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3. 검토보고 (전문위원 유준상)

○ 본 동의안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관련하여 법률적·제도적 기반 조성,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규약을 만들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마포구의 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 검토의견으로는

마포구는 홍대를 중심으로 예술과 음악이 어우러진 유명한 관광명소로 변모하였지만, 이면에는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한 영세 자영업자 및 예술인이 임대료 상승으로 해당지역에서 밀려나가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홍대를 중심으로 주변 연남동, 합정동, 망원동 지역까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방지조례를 제정하고, 홍대 주변 건물주 협의회와 상생 협약을 마련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시장논리에 밀려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서울시 자치구를 비롯한 전국 각 도시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여 지역공동체 생태계가 무너지고, 지역상권 쇠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 및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대표하는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 및 향후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